[별표 7] <신설 2014.12.8., 개정 2023.10.04.>

특정 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방지 (제8조제4항 관련)

1. 반추동물용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원료투입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함)에서는 특정 동물성사료 사용 금지. 다만, 동일 공정에서 반추동물용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서 규정한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추동물용사료에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1.의 단서와 관련하여, 돼지 장의 점막 가수분해물 중 분자량이 10,000Da 미만이고, 90℃에서 3시간 이상 열처리된 제품(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열처리를 거친 제품)은 세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1에서 규정한 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당해 벌크차량의 번호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반추동물용사료 또는 특정 동물성사료를 톤백 또는 지대형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그림 2에서 규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포함한 육골분은 소해면상뇌증(BSE)의 매개로 불활성화하기 위하여 육골분사료의 원료를 가열처리 전에 최대 50㎜ 입자로 절단한 후 제조하여야 한다.

5. 축우용(생후 약 3개월령 이내의 소를 말함) 대용유용 배합사료는 동물성 유지(식용의 고기에서 채취한 지방만을 원료로 한 것)의 불용성 불순물의 함량이 0.02% 미만이어야 한다.

6.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상인 동물성 유지는 반추동물용 사료 또는 반추동물용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7. 동물성유지가 포함된 분말유지 및 불해성지방은 원료로 사용한 동물성유지에 대한 불용성 불순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성유지만을 원료로 하여 카제인 등으로 코팅한 분말유지 및 불해성지방의 경우에도 원료로 사용한 동물성 유지의 불용성 불순물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5 참조)

8. 불용성 불순물의 함량이 0.02% 이상인 동물성 유지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축우용대용유용 배합사료로 사용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5 참조)